

의안번호	2213064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5.11.19.
추계번호	25C526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지구의 지정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재량규정
3	안 제7조 (교육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8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이하 “지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지구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 3. 지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4. 지구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 평가 5. 그 밖에 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 (지구 전담기관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 (아동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특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정규과정 외의 시간 동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보육 전문가 및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7	안 제11조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하 “늘봄학교”라 한다)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의 늘봄학교(이하 “거점형 늘봄학교”라 한다)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책임,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교구의 관리·점검·보수·교체 등 조치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의 확인 등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1조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센터 등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의 통학을 위한 차량의 운영 2. 안전사고 및 범죄 등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방범시설의 설치 3. 늘봄학교 운영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재량규정
8	안 제12조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 수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3조 (교육과정의 특례)	(제1항)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교육감은 지구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4조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이하 “농어촌학교”라 한다)로의 전학·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4조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3항)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재량규정
11	안 제15조 (기초학력보장 및 지역 교직원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실시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지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을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과 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제5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과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16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6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제2항) 법무부장관은 지구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17조 (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지구의 지정 등) 안 제7조 (교육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안 제8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지구 전담기관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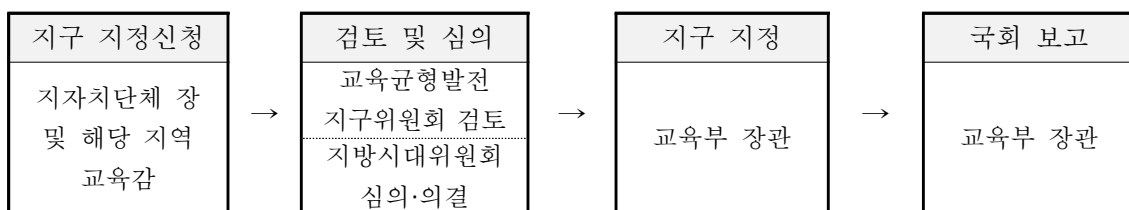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3	안 제10조 (아동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특례) 안 제11조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안 제12조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안 제13조 (교육과정의 특례) 안 제14조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안 제15조 (기초학력보장 및 지역 교직원에 관한 특례) 안 제16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안 제17조 (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 지역은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되는 경우 돌봄서비스 운영, 학교 설립, 교원 자격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운영 절차



□ 교육부는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교육발전특구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비용 지원, 소규모 학교 운영, 지역교원제 등 제정안과 유사한 특례가 적용됨

[표 2] 교육발전특구 특례 주요 내용

유아·돌봄	초·중등	교원
○ 특구 내 협약기관 유치원 설립·운영 허용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서비스 확대 ○ 학교 밖 돌봄 안전공제 보상 근거 마련	○ 다문화·외국어, IB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학구역 미지정 ○ 소규모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학년제 편성 자율화 ○ 초·중·고 및 특수학교 병설 허용	○ 지역교원제 신설 ○ 교원자격에 대한 특례 허용 ○ 협약기관 공동수업 가능 확대 ○ 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 완화 및 기업임직원 기간제 교원 임용 ○ 산학겸임교사 기본연구비 상향 ○ 직업계고 대상 공사립 교사 파견 특례 ○ 전공 교과 실무 경험자 전문교원 확보 ○ 특구 내 학교 교원 추가 배치
유학생	대학	
○ 무상교육기관의 사증발급인 증서 발급 ○ 유학생 재정능력 기준 완화 ○ 유학생 대상 유상교육 적용	○ 지역산학 캠퍼스 조성 특례 ○ 산학협력교육 이동수업 요건 완화 ○ 교지 밖 다문화 교육 대학 부속시설 설치	

자료: 교육부

- 2차에 걸친 시범지역 신청을 통해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와 8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되었으며, '24년 1,892억원, '25년 3,008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됨
 - － 참고로,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건 발의된 상태임¹⁾
 - * [참고자료 1]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 * [참고자료 2]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1) 의안번호 제2206874호(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895호(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제정안이 시행되어 지구위원회가 신설되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등 교육 균형발전지구(이하 “지구”)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 (안 제3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안 제6조 내지 제9조) 제정안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구위원회 및 전담 기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조직 구성의 구체사항이 대통령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1인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음
 - (안 제10조 내지 제17조) 제정안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정될 지구의 수, 규제특례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교육부가 동일 취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만을 산출하기 어려움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지정 단위 ¹⁾	1차 지정('24.2.)	2차 지정('24.7.)
기초지자체 (42)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 춘천, 화천, 원주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 광양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광역지자체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광역지자체 지정 기초지자체 (41)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주: 1) 교육부는 ①기초지자체장·교육감의 공동신청, ②광역지자체장·교육감의 공동신청, ③광역지자체가
특정 기초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음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부산	30,465	33,000	63,465
대구	21,444	20,200	41,644
인천	3,300	3,000	6,300
광주	11,000	11,000	22,000
대전	10,070	10,000	20,070
울산	3,028	5,271	8,299
세종	126	3,000	3,126
경기	7,451	21,125	28,576
강원	18,451	29,137	47,588
충북	4,213	13,785	17,998
충남	9,100	11,860	20,960
전북	15,560	34,810	50,370
전남	4,877	24,144	29,021
경북	29,652	38,158	67,810
경남	13,866	35,713	49,579
제주	6,600	6,600	13,200
합계	189,203	300,802	490,005

자료: 교육부